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단5089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9. 3. 6.

판결 선고 2019.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6,123원 및 그 중 34,426,350원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2018. 6.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34,596,123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34,426,350원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9.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D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모두 E에게 위임하여 E이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관련 대금도 모두 E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E에게 계약 관련 사항을 위임하였다거나 계약 관련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와 E 사이의 내부적 위임관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그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거나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민석

별지